

##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엑시엄자산운용 주식회사

※ 이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 58조에 따라 재정한 회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입니다.

#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23.08.21.

## 제1조(목적)

본 지침은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제1항 및 『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에 근거하여 수수료 부과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적용범위)

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법, 자본시장법 시행령, 자본시장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자규정 및 금융투자업자규정 시행세칙,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그 외 업무관련 법규(이하 “관련법규”라 한다)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## 제3조 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“수수료 등”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  - 나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  - 다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  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  - 마. 성과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 (자본시장법 제86조,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자규정 제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 한하여 수령 가능)
2. 수수료
  - 가. 판매수수료 :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,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 판매수수료와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
  - 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시 일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 이는 펀드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어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됨.

## 제4조 (수수료 부과 기준)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수수료 부과 시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## 제5조 (수수료 부과 절차)

- ①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, 규모,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

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
- 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
#### **제6조 (수수료의 인상)**

- ① 이 지침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신탁계약 및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.
- ②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또는 투자회사의 주주총회결의를 거쳐,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#### **제7조 (설명의무)**

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#### **제8조 (공시)**

자본시장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이 지침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#### **제9조 (협회에 대한 통보)**

자본시장법 제58조제3항에 의거 이 지침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0조 (투자광고)**

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5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,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1조 (기타 사항)**

상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,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범위의 변경, 내부 업무 절차 또는 조직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.

#### 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